

산재노동자 직업복귀 지원을 위한 재활서비스 체계 및 원직장 복귀 사례



이상진

근로복지공단 재활국
직업복귀지원부장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은 1964년부터 업무상 재해에 대한 치료와 보상 등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산재보험 대상을 확대해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산재요양환자도 증가 추세가 되어 2021년 산재요양종결자는 107,657명으로 전년 대비 8,314명(8.4%)이 늘었다.

이러한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산재노동자의 사회복귀 기간 단축과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소시켜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2000년부터 산재노동자 재활사업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2001년부터 현재까지 5차에 걸쳐 재활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선진국 수준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선해 왔다. 또한 산재보험전문가인 잡코디네이터를 양성하여 산재노동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로 2021년 산재요양종결자 107,657명 중 직업복귀자는 72,497명(67.3%)에 이르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여전히 산재요양종결자 3명 중 1명은 실직 상태로 경제적 위기를 겪는 등 산업재해로 인한 산재노동자의 개인적 손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산업재해의 직·간접 손실액이 2020년 기준 8.45%나 증가하고(2020년도 산업재해현황분석, 고용노동부, 2021), 근로손실일수도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일(554,000일)보다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일(55,343,490일)이 99.9배나 높게 나타나는 등 손실이 크다. 이런 통계가 말해주고 있듯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어 왔으며, 산재노동자의 조속한 직업 복귀는 그래서 더 큰 의미를 갖게 된다.

우리나라는 재활사업 도입 이후 주로 산재노동자를 재활서비스 대상으로 삼고, 요양단계별로 산재노동자의 상병 상태 및 직업 복귀 유형 등 특성에 맞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재활서비스는 상병부위의 조속한 치료를 위한 집중재활치료 등 의료지원서비스, 산재로 인한 심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상복귀서비스,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업주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재활서비스 전달체계는 산재노동자가 희망하는 직업 복귀 유형 즉, 타직장 복귀와 원직장 복귀에 따라 적합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타직장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새로운 직무능력 습득을 위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거나, 취업설명회 및 민간취업전문기관 연계 등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11개 권역별 재활지원팀에서 전담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원직장 복귀 희망자는 상병 및 원직복귀 취약 정도에 따라 내일찾기서비스(My job, Tomorrow)와

재활서비스는 상병부위의 조속한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서비스, 산재로 인한 심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상복귀서비스,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업주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널리 보기

: 산재보상 이슈 및 대응 ③



일반서비스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즉, 요양 후 장애가 예상되고 30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한 자에게는 공단의 산재보험전문가인 잡코디네이터가 1:1로 전담하여 산재보험의 요양·보상·재활서비스를 알맞은 시기에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일찾기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 후, 무장해가 예상되거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한 자에게는 일상복귀서비스나 취업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하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지원하는 일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원직장 복귀 희망자에 대해서는 공단 소속 병원에서 요양 종결 이전에 신체능력평가(재활의학과) 및 직무분석(직업환경의학과) 등 직업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원직복귀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사업주에게 제안함으로써 사업주가 산재 노동자에 대한 원직복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 장애 제 1~12급에 해당하는 소속 노동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과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듯 재활서비스를 산재노동자 중심으로 제공한 반면, 실질적인 직장 복귀 의사결정권자인 사업주에게는 원직복귀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2022년도부터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를 법제화하여 사업주를 요양 초기부터 직접 재활사업에 참여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여기서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란, 원직복귀 의사가 확인된 산재 노동자의 재해발생 당시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지원하고,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를
법제화하여 사업주를
요양 초기부터
직접 재활사업에
참여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산재 노동자에게는 직장복귀특별진찰(직무분석, 직업능력평가, 작업능력강화훈련)을 시행하여 조속한 원직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 시행 후 성공적인 원직장 복귀를 지원한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특수형태근로자 A씨는 지난해 12월 신용카드 배송 중 아파트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허리 골절을 입고 수술 후 극심한 고통과 불안을 겪었다. A씨는 치료초기부터공단 잡코디네이터와의 1:1 집중 상담을 통해 직장복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주 지원제도 설명과 함께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작성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제출된 직장복귀계획에 따라 집중재활치료 및 심리안정, 직업복귀특별진찰 등을 지원한 결과 비록 산재 장해는 남았지만 원직장 복귀가 가능하다는 직업 복귀 소견에 따라 A씨는 지난 8월부터 원래 직무에 복귀하여 큰 무리 없이 일하고 있다.

육제품 제조업에 근무하는 B씨는 올해 2월 기계 수리 도중 엄지와 둘째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해를 입었고 사고 당시 트라우마로 심리적 불안감을 겪었다. 공단 잡코디네이터가 가족상담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과거에 산재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산재 멘토의 멘토링을 제공하여 B씨가 산재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하였다. 그리고 사업장 컨설팅 결과, 산재노동자의 원직장 복귀를 위해서는 대체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직장 복귀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지원했다. 그 결과, B씨는 현재 장해 11급으로 원직무에 성공적으로 복귀했으며, 공단은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산재노동자의 직업 복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산재 노동자에게 성공적인 직업 복귀를 위한 전문 재활서비스가 필요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직업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살펴본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알 수 있듯이 소개한 두 명의 사례처럼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산재노동자에게 성공적인 직업 복귀를 위한 전문 재활서비스가 필요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직업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사업주 참여를 통한 조속한 원직복귀 지원을 위해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점과 사업주에게 협조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족한 점, 비협조 시 사업주나 산재노동자에게 페널티가 없는 등의 문제는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산재노동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